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535호 2011. 5. 30(월)

경 상 북 도

조 례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55호) 5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256호) 11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57호) 3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58호) 33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59호) 38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60호) 116

회 람								
--------	--	--	--	--	--	--	--	--

○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제3261호)	119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제3262호)	121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제3263호)	126
○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3264호)	131

■ 규 칙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688호)	13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제2689호)	139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제2690호)	142

■ 고 시

○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정정 고시(제2011-206호)	196
○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제2011-207호)	214
○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제2011-208호)	304
○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제2011-209호)	307

■ 공 고

○ 공시송달 공고(제2011-467호)	312
-----------------------------	-----

○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제2011-470호)	326
○ 측량업 등록 공고(제2011-471호)	328
○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용역 제안서 예비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제2011-478호)	329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공고(제2011-484호)	335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제2011-485호)	337
○ 측량업 등록 공고(제2011-486호)	338

경상북도 교육청

■ 규 칙

○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제585호)	340
---	-----

시 군

■ 고 시

○ 김천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김천시 고시 제2011-642호)	357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문경시 고시 제2011-27호)	379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문경시 고시 제2011-28호)	381

공고

- 경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사업 실시계획인가서류 열람·공고

(경주시 공고 제2011-686호) 384

- 전자공인 공고(경산시 공고 제2011-421호) 386

- 신조공인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1-266호) 38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69호) 390

- 하천점용 허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75호) 391

■ 농 고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등록업체 공고(상주소방서 공고 제2011-8호) 394

경 상 북 도

조 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 조례 제3255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하고, 제3장제8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41번지에 둔다.

제32조(원장)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 활동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절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신 설〉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41번지에 둔다.

현행	개정안
제31조(설치) (생략)	제34조(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2조(공공도서관) (생략)	제35조(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야영장) (생략)	제36조(현행 제33조와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 이유

-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으로 '경상북도학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 조례 제3256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

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3. “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 후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 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①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서 제외한다.

1. 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 ①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교육청 감사 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공익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제9조에 따른 위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사 등 신분상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교육감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확인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부위원은 청렴한 자로서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14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징계 등 필요한 조치)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한다.

【별 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12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정 · 환수결정액	·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 알선 · 청탁의 대가인 금품 · 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 알선 · 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보상금액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공 익 신 고 서

(제4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급			
신 고 내 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 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공익신고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고 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
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주 소	
이의신청 사 유	※ 이의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감사관) 귀하		

공익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청 자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

(제7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자	인사 등 불평등 조치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비고
			조치일	조치내용			

[별지 제4호 서식]

공익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

(제12조제4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1. 제정 이유

- 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기한(제3조)

-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 : 7일 이내)

나. 사실조사(제5조)

-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함
-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함

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제6조)

- 신고자(협조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상의 지급(제12조)

- 보상금액 : 최고 5천만원 이내

마. 보상의 지급 제외 및 환수(제13조 및 제14조)

-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57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제13항, 14항을 삭제한다.

제9절 “산림생태과학원” 을 “산림자원개발원” 으로 한다.

제64조 중 “경상북도산림생태과학원” 을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으로, “산림

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5조 중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6조 중 제15항을 17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5항, 제16항을 신설한다.

15. 수목원관리소의 관리·운영

16. 수목장림 설치 및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새경북기획단장”을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1. 조직 및 임무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도청이전추진단”을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한다.

◇ 개정이유

다양한 산촌소득 연구·개발, 임산물 마케팅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목원 기능이관과 산림생태과학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구 조례를 개정코자함

◇ 주요내용

가. 직제조정(수목원관리소 : 산림환경연구원 → 산림생태과학원)

나. 명칭변경(산림생태과학원 → 산림자원개발원)

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직위명 개정을 위해 부칙으로 개정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58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이외의 부분 중 “4,791” 을 “4,79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6명” 을 “1,907명” 으로 한다.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중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 를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1, 7급 4)” 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3년 주기로 5급이상 정원의 상호교체 합의에 따라 시·도간 정원조정 등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4,791명 → 4,792명(增1명)

나. 정원변동내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시·도간 정원조정)

- 개방·계약직 조정 : 7명 → 8명(+1, 청장)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u>4,792</u>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u>1,393</u>	-			
	1 급	<u>1</u>	<u>1</u>			
	2~3급	1		1		
	3 급	<u>11</u>	<u>10</u>		1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3~4급	1	1			
	4 급	<u>74</u>	<u>54</u>	7	4	9
	5급이하	1,305	-			
별 정 직	소 계	42	-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이하	37	-			
연 구 직	소 계	190	-			
	연구관	34			32	2
	연구사	156	-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지도직	소 계		27	-			
	지도관		9			9	
	지도사		18	-			
소방직	소 계		2,747	-			
	소방정		18	2		16	
	소방령이하		2,729	-			
기능직 계			351	-			
교원	소 계		41	-			
	학 장		1			1	
	교 수		29			29	
	조 교		11	-			

별표 5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관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지정하고
- 나.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위임된 사무중 폐지된 사무의 삭제와 자구수정, 근거법령 불일치 등을 정비하는 한편
- 다. 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규 위임사무

- 지방하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 사무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으로 개정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자리경제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교통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군수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동법 제19조	칠곡군수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동법 제20조	(SOFA자 동차관할)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동법 제21조	시장·군수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동법 제2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발급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동법 제7조 동법 제7조제3항 동법 제7조제4항 동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0조제6항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자 동차관할)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자 동차관할)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및 폐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8항 동법 제13조제9항 동법 제14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동규칙 제8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시장·군수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자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동차관할)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시장·군수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제83조 동법 제83조2항 동법 제89조 준용) 동법 제94조	시장·군수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동법 제38조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동법 제39조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동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 인가	동법 제41조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 조·설비의 시정 명령	동법 제42조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43조	
	아. 개선명령	동법 제44조	
	자. 사용명령	동법 제45조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동법 제47조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동법 제48조 (동법 제14조 준용)	
	타. 상속신고수리	동법 제48조 (동법 제15조 준용)	
	파. 휴업·폐업허가	동법 제48조	시장·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보고·검사 등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너. 청문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러.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에	(동법 제16조 준용) 동법 제79조 동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 동법 제13조제7항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제56조	수 시 장 · 군수 칠곡군수 (SOFA자 동차관할)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한함) 가. 사업등록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 양수 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 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84조 동법 제8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나. <삭 제> 다.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라. 사업관리 위탁허가 마. 사업개선명령 바.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사. 상속신고수리 아. 차령연장 자.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정지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삭 제> 동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5조 (제14조제1항, 제3항 준용) 동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동법 제84조 동법 제8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차. 청문	동법 제86조	
	카.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동법 제88조	
	타. 과태료부과·징수	동법 제94조	
	43. <삭 제>	<삭 제>	
	44. <삭 제>	<삭 제>	
	45. <삭 제>	<삭 제>	
	46. <삭 제>	<삭 제>	
	47. <삭 제>	<삭 제>	
	48.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9.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50.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동법 제60조제1항	
	51.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52.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제7호	
	53.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 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54.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 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 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조부터 제3조의3, 동법시 행령 제2조3, 제2조의4 동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제12조제7항 동법 제12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동법 제13조의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타.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18조의8 동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 정책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39조제5항 동법 제39조제6항, 제7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동법 제40조제3항, 제4항 동법 제66조제1항 동법 제78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 동법 제4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제3항 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사업의 승계 마. 허가의 취소 등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 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고의 수리 자. 위해방지조치의 명령 등 차. <삭 제> 카. 보고·조사 등 타. 청문 파. 과태료부과·징수 8-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9.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10.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12조제1항, 제4항 동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6항 동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삭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40조 동법 제52조제4항 동법 제34조 「전기사업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12.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1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제30조의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18조 제2항 동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군수

투자유치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노사 지 원 과	1.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위반사항 등 에 대한 판매중지·개선·수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과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 리 등 이행 명령 권한 2.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 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내지 제6항 동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제41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4호, 동법 제41조 제3항	
국 제 통상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군수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 화 예술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농수산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 업 정 책 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권)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식 품 유 통 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동법 제38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 촌 개 발 과	1.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등록시 수원공소재지 시군에 등록 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단,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3.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단,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시장·군수
축 산 경 영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 약사 등 변경신고 수리 4. 공수위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5.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8.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수의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법 제23조제2항	
수 산 진 흥 과	1. 보호수면의 관리 2. 육성수면의 관리 3.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수산업법」 제66조 동법 제69조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	시장·군수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 색 환 경 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대기오염 경보발령해제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7.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8.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9.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및 저황유외의 연료사용의 승인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10.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11. 청정연료의 사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 및 조치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4.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대기) 15.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 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 (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 (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 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 탁 승인,폐기물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등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 (시군수입)및 가중·감경,채납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제3항,제4항,제7항, 제12항,제13항,제14항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7,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 조 별표8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제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 제23조의3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 (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사-1.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사-2.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사-3.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사-4.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사-5.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사-6.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3항 동법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의2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67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9 동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9 동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9 동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9 동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9 동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11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정		
	사-7.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동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11	
	사-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동법시행규칙제46조 별표13	
	사-9.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및 관리자에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사-10.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아.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 입력 등	동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동법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차. 폐기물처리업자,공제조합 등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 (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동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카.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계약,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동법 제40조 제8항, 제9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타. 삭제 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하.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거.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완화 인정 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더.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표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16.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삭 제 동법 제32조 제3항 동법 제3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6조 별표17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별표16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동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부당이득금의 징수 차. 금지행위의 단속 카.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타. 자연자원의 조사 파.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하.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거. 대집행 너.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더. 허가에 관한 협의 러.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머.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베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서. 주민지원사업	동법 제38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2조 동법 제17조의2 동법 제73조 동 법 제73조의2	
	18.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가 -1.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나-1.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라. 과징금의 처분 등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마-1.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사-1.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 철회 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동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30조 제3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 차.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공제 조합과 협의 등 하. 청문 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인정 너.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동법 제41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동법 제43조, 제45조 동법 제45조, 제46조 동법 제5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2 동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3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9.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2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2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 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 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조례」 제10조 동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동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물산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3.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4.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5.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6.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8. 고령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동법 제25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 동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동법률 제21조제1항 동법률 제21조의2 동법률 제56조제1항, 제2항 동법률 제59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 림 녹지과	1. 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 2. 영림기술자 배치 3.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4.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5.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나.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6.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제6조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산림보호법」 제7조, 동법 시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7. 삭 제 8.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행규칙 제2조, 제3조 동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삭 제 동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여 성 청 소 년 가 족 과	1. 윤락행위예방 및 요보호자의 선도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민간시설에한함)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다. 시정명령 라. 허가취소 마. 청문 바. 보험가입 사. 수련시설의 폐지 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시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31조의2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의2 동법 제38조제3항, 제4항	시장·군수
보 건 정 책 과	1. 진료비의 징수 2.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52조 「의료법」 제59조 제1항	시장·군수
식의약품 안 전 과	1.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 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삭 제 13.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4.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약사법」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약사법」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동법 제6조제2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44조 삭 제 동법 제8조제3항 동법 제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5.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6. 삭 제 1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 른 협의	동법 제29조 삭 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 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제19조의2제1항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7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 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 시공 등 조치명령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 내지 사호에 관한 다음 권한)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 내지 아호에 관한 권한)	동법 제37조제2항 동법 제37조제5항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48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2조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 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 행에 관한 업무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 례제2조제 5항의규정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산업단지 제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가. 도로(도시지역내 시는 중로 이하 군은 소로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중로 이하 도로법상 사군도 이하)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라. 도서관(국가, 도 단위 제외)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삭도 아. 시장 자. 공공청사 차. 수도공급설비 카. 하수도(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타. 도축장 파. 방풍설비 하. 사방설비 거. 방화설비 너. 방조설비 더. 연구시설 러. 문화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어. 광장(단, 교통광장은 시는 중로 및 시도, 군은 소로 및 군도이하에 접한 광장에 한함) 저.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처. 공공공지 커.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터. 전기공급시설(변전시설에 한함) 퍼. 장례식장 허. 저수지 고. 가스공급설비(정압, 배관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노. 방수설비 도. 유수지 로. 폐차장 모.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보. 청소년수련시설 소. 공동묘지 오. 화장장 조. 납골시설 초.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코. 폐기물처리시설		
	4.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	동법 제30조제5항, 제6항	
	5.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48조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동법 제32조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동법 제53조 동법 제88조, 제9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변경,폐지포함).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내지92조	시장·군수
	10.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	동법 제98조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동법 제11조 제3항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동법 제12조 제4항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 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동법 제17조, 제18조	
	16. 선수금 승인	동법 제24조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동법 제25조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동법 제49조 제1·2·3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동법 제50조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동법 제51조 제3항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동법 제52조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동법 제57조 제1·3·4항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동법 제65조 제3항	시장·군수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동법 제67조 제1항	시장·군수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동법 제72조 제1항	시장·군수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동법 제73조	
	27. 청문 실시	동법 제74조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9.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15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0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이하에 한함)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 (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	조 내지 제9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39조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점용허가(국토해양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2.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3. 동 권리, 의무의 승계 등 4. 도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동 점용허가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6.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점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45조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29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7.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동법 제31조	
	8.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동법 제50조제4항	
	9. 지방도의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동법 제40조	
	10. 동 축목의 재식 및 벌채허가	동법 제50조제6항	
	1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정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제6항	
	12.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동법 제24조	
	13. 동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동법 제54조	
	14. 동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15.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동법 제49조	
	16.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17. 건설기계 등록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8.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9. 등록의 말소	동법 시행령 제5조	시장·군수
	20.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동법 제6조	
	2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동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22.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동법 제26조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46조제1항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동법 제20조	
	23.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내지 제69조	
	가. 토지, 물건조서 공부대조 확인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보상협의회 구성 운영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다. 편입토지 분할 측량 및 편입 토지물건의 감정평가 의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라. 보상가 사정 및 보상액 산정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보상청약,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의 지급 바. 보상계획의 개별통지 사. 보상계획의 열람 아. 이의신청 접수 자. 이의신청 시정 차.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24. 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중 가. 체불용지의 소유자 및 보상 여부 확인 나. 체불용지의 감정평가 의뢰 다. 보상액 산정 및 결정 라. 보상금 지급 및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 25.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26. 건설기계 구조변경	동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제15조제1항 동법 제15조제3항 동법 제15조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동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 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7. 등록번호표 반납 28.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29.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3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면허증 반납 31.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의견진술, 보고검사 등 3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33.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연결 허가 34. 원인자 부담금 징수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제11조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동법 제35조, 제36조, 제44조 동법 제34조의 2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도로법」 제64조, 제40조	시장·군수
건축 지적과	1. 삭 제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3.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삭 제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시장·군수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 동법 제3조의2 제2호	
치 수 방 재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제외)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하천법」 제5조제2항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7. 하천의 점용 허가(법제33조제1항 제4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외) 및 고시	동법 제33조	시장·군수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동법 제36조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및 감면	동법 제37조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동법 제38조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동법 제67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동법 제69조	
	13. 동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동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	동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5. 동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동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동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동법 제46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권한 가. 보상청구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행정지원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
세 정 과	1. 도 수입증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군수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자리경제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민생 경제 교통과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사업에 한함) 가~카. (생략) <u><신설></u> 타.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생략) <u><신설></u> 동법	민생 경제 교통과	41. (현행과 같음) 가~카. (현행과 같음) <u>타. 차령연장</u>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제84조</u> 동법 제85조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파. 청문 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거. 과태료 부과징수	제85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신 설></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u><신 설></u>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아. 차령연장</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u>제84조</u>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아.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정지명령, 사업 계획 변경 명령</u> <u>자. 청문</u> <u>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u> <u>카. 과태료부과징수</u>	동법 제85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u>자.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정지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u> <u>차. 청문</u> <u>카.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u> <u>타. 과태료부과징수</u>	동법 제85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에너지 정책과	<u>1.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u> <신 설>	<u>「에너지이용합리화법」</u> <u>제31조제1항</u>	에너지 정책과	<u>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중 다음에 관한 권한</u> <u>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u>	<u>「에너지이용</u>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합리화법</u>
					<u>제31조</u>
					<u>제1항</u>
	〈신 설〉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 용 검사 등	<u>동법 제39조</u> <u>제5항</u>
	〈신 설〉			다.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 제 등	<u>동법 제39조</u> <u>제6항</u> <u>제7항</u>
	〈신 설〉			라.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u>동법 제40조</u> <u>제3항</u> <u>제4항</u>
	〈신 설〉			마.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u>동법 제66조</u> <u>제1항</u>
	〈신 설〉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u>동법 제78조</u>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불합격 검사기기의 조건부 사용	동법 제39조 제5항		〈삭 제〉	〈삭 제〉
	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동법 제39조 제6항		〈삭 제〉	〈삭 제〉
	4.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 수리 및 선임기한 연기승인	동법 제40조		〈삭 제〉	〈삭 제〉
	5.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실시 등	동법 제66조 제1항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6.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가.법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7 ~ 13 <생략>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 제78조제4 항제9호 <생략>		<삭제> 7 ~ 13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농수산분야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농 업 장래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건)	「농지법시행 령」 제59 조	농 업 장래과	1. 농지전용허가·협 의 부지관리 (도 지사의 허가·협 의 처분건)	「농지법시 행령」 제 58조

환경해양산림분야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녹색 환경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측정 망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 전법」 제3조 제2항, 「소음진동규 제법」 제3조	녹색 환경과	1.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 법」 제3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 법」 제3조 제2항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제3조		2.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고시	제2항 「대기환경보 전법」 제4조 제2항, 「소음진동규 제법」제4 조 제2항 「소음·진동 규제법」제 5조			법 제4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 법」 제4조 제2항
	4. 관계기관 협의			4.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관리 법」 제5조
	15.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업무			15.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u>또는 처리업(사업계획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u> (변경허가,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결정·제한, 허가	「폐기물관리 법」 제25 조제1항,제 2항,제3항, 제4항,제7 항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u>재활용 또는 처분업 (사업계획검토,사업계획 적 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u>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 항,제2항,제3 항,제4항,제7 항, 제12항 제13항,제14항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등(폐기물의 처리 기준 검토에 대한 인정)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 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		여부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 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 시설 승인 (변경승인), 수 집 운반증발급(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 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 정 등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 조, 제31조, 제 32조 별표8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동법 제27조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 및 금액결정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다.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 납부(시군수입) 및 가중	동법 제28조, 제46조의2, 동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제11조		<u>감경,제납 처분</u>	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라. ~ 마. (생 략)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동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u>폐기물 처리 확인</u>	동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의2
	사. 폐기물재활용 신고, 변경신고 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 등	동법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사. 폐기물 <u>처리</u> 신고, 변경 신고 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 (<u>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u>) 등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신 설〉	〈신 설〉		사 -1. 폐기물 처리 기간 <u>예외인정</u>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7호
	〈신 설〉	〈신 설〉		사 -2.처리능력 2톤/시이상	동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소각 시설의 계량</u>	<u>제35조</u>
				<u>시설 미설치 인정</u>	<u>별표9</u>
	<u>〈신 설〉</u>	<u>〈신 설〉</u>		<u>사 -3. 폐기물 최종 처리 시</u>	<u>동법 시행규칙</u>
				<u>설의 계량시설 및 세륜</u>	<u>제35조</u>
				<u>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u>	<u>별표9</u>
	<u>〈신 설〉</u>	<u>〈신 설〉</u>		<u>사 -4. 관리형태립 시설에</u>	<u>동법 시행규칙</u>
				<u>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u>	<u>제35조 별표9</u>
	<u>〈신 설〉</u>	<u>〈신 설〉</u>		<u>사 -5. 매립되는 지정 폐기</u>	<u>동법시행규칙</u>
				<u>물 외의 폐기물이 침출수</u>	<u>제35조</u>
				<u>발생이 없거나 발생</u>	<u>별표9</u>
				<u>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u>	
				<u>이하로 배출 인정</u>	-
	<u>〈신 설〉</u>	<u>〈신 설〉</u>		<u>사-6.폐기물처리 시설에</u>	<u>동법시행규칙제</u>
				<u>대한 온도 지시계</u>	<u>42조 별표11</u>
				<u>등 계측장비의 비정상</u>	
				<u>작동 인정</u>	
	<u>〈신 설〉</u>	<u>〈신 설〉</u>		<u>사 - 7. 매립시설주변 수질</u>	<u>동 법 시 행 규 칙</u>
				<u>검사결과 보고</u>	<u>제42조 별표</u>
					<u>11</u>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신 설〉	〈신 설〉		사 - 8.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신 설〉	〈신 설〉		사 - 9.매립시설 사후 관리 종료신청 및 관리자에 통보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
	〈신 설〉	〈신 설〉		사 -10. 매립시설 검사 기관 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 성적서의 제출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아.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등	동법 제58조 동법시행규 칙		아.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동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자.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 처분의 감경 결정	제81조 동법 제61조 동법시행규 칙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동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차.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 명령, 처리이행 보증금	제83조 동법제40조		차. 폐기물처리 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조치	동법 제40조 제2항, 제3 항, 제4항,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제2항, 제3항, 제10항,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명령(변경명령), 처리 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 명령의 연기 등	제10항,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카. 방치폐기물의 처리	동법제40조		카.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계약의 갱신 명령	제8항, 제9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현행과 같음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금의 예치, 신청, 접수, 결과통보, 처리 이행보증금정산 통보의 접수, 처리 이행 보증금 반환, 차액반환 이자 가산 등	(생략)		〈삭제〉	〈삭제〉
	파. (생략)	(생략)		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동법 제33조 제2항		하.(현행과 같음)	동법 제33조 제3항
	〈신 설〉	〈신 설〉		거. 사업장,지정 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 기간 예외 인정, 재활 용시설 기준완화 인정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 표17
	〈신 설〉	〈신 설〉		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의 농자 저지대연약 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별표 16
	〈신 설〉	〈신 설〉		더. 의료폐기물 (인체 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표지 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신 설〉	〈신 설〉		러.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 업자 등에 폐기물처리명 령	동법 제39조의 2,제39조의3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신 설〉</u> 18.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 <u>〈신 설〉</u>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u>〈신 설〉</u>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22 조, 제25조 동 법 시 행 령 제9조		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u>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u> 18.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u>사업계획적정 통보</u>),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u>영업정지 명령 등</u> 가 -1 허가조건 부여, 허가 증 교부(재교부), 허가기 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 정 처리 조치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승인	동 법 시 행 규 칙 <u>제75조</u>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1조, 제22조, 제25조 동 법 시 행 령 제 <u>14조,</u> 동 법 시 행 규 칙 <u>제12조,</u> <u>제13조, 제14조,</u> <u>제15조</u> 동 법 시 행 령 9조 제1항 제3호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제1항 제3호			
	〈신설〉			나 -1. 임시보관장소 승인 (변경승인), 승인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4조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동법 제23조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예외 인정	
	라. (생략)	(생략)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동법 제27조		마.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현행과 같음) 동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신설〉	〈신설〉		마 - 1 승인서 및 신고 필증 교부	제16조, 제18 조
	바.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완료 및 신고	동법 제28조		바. (현행과 같음)	동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사.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동법 제29조		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동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u>〈신 설〉</u>	<u>〈신 설〉</u>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u>사 -1. 개선기간 연장, 완료</u> <u>보고 및 사용중지</u> <u>명령 철회</u>	<u>제22조</u> <u>동법 시행령</u> <u>제7조 제1항</u> <u>제7호</u>
	아. (생 략) 자. 권라의무의 승계 등	(생 략) 동법 제31조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법 제31조 <u>동법시행규칙</u> <u>제23조</u>
	차. 휴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	동법 제33조 제34조		차.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u>폐기물처리 확인</u> · <u>점검 등</u>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규칙 <u>제25조,제26</u> <u>조</u>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 조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 조치 및 방치폐기물 <u>처리이행보증 서류</u> <u>접수, 보험금 수령 등</u>	동법 제41조, <u>제42조</u> 동법시행령 제 19조, 제20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	동법 제43조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조 동법 제43조, 제45조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동법 제45 조, 제46조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동법 제45조, 제46조
	하. 청문 <신 설>	동법 제57조 <신 설>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현행과 같음)
				가. 건설폐기물 수잡 운반중 발급,수잡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장기 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 처리기준 인정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2
				나.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동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2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자원의 절약 과 재활 용 촉 진 에 관한 법 률」 제 25 조 의 3 동법시행규 칙 제 20조 의 6 및 별 표 8		21.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별표</u> <u>3</u> (현행과 같음)
	<u><신 설></u>			<u>가. 고형연료 제품 공급</u>	
	<u><신 설></u>			<u>계획서 접수</u>	
	<u><신 설></u>			<u>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u>	
				<u>고형 연료 제품 사용신고</u>	
				<u>다. 다이옥신 배출 기준</u>	
				<u>초과에 따른 통보</u>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및 개선사항 제출	
산 립 녹지과	5.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에 관한 사무 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 행위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 항, 제3항, 제7항 동법 시행규 칙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산 립 녹지과	5. 보호수 관리등에 관한 사 항 (보호수의 지정 및 지 정해제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나. 보호수에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6. 보안림에 대한 다음의 관한 가. 보안림의 관리 등 나. 보안림의 지정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 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 법 시 행 령		6.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 음의 권한 가.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	「산림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 조,3조 동법 제8조, 동법 시행규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라. 보안림의 지정해제</u>	제49조,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동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동법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u>위 제한</u> <u>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u>	<u>칙 제4조</u> <u>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u>
	<u>7. 운전면허 등의 취소정지 및 차량에 대한 처분</u>	<u>「산림법제94조」</u>		<u>〈삭 제〉</u>	<u>〈삭 제〉</u>

보건복지여성분야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식 의 약 품 안전과	12. 몰수마약류의 폐기, 기 타 필요한 조치	「마약류관리 에 관한 법 률」 제53조	식 의 약 품 안전과	〈삭 제〉	〈삭 제〉
	16.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내용 작성·비치	-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삭 제〉	〈삭 제〉

건설도시방재분야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건 축 지적과	1.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승 인취소에 관한 권한(단, 국가	「주택법」 제16조	건 축 지적과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안)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u>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u> <u>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u> <u>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u> <u>1,000세대이상을 주택건설사</u> <u>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u> <u>외)</u>				
치 수 방재과	1~ 22. (생 략) <u>〈신 설〉</u>	(생 략) <u>〈신 설〉</u>	치 수 방재과	1 ~ 22. (현행과 같음) 23. <u>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u> <u>호의 과태료 부과징수</u> <u>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u> <u>토지출입</u> <u>나. 제46조제6호 및 7호</u> <u>위반행위</u> <u>다. 제53조제2항 신고의무</u> <u>위반</u> <u>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u> <u>위반</u>	(현행과 같 음) <u>동법 제98</u> <u>조</u>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60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24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제2조)

나. 정기분 부과지 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세액 공제(제23조의2 신설)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일부 인용조항 정비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61호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을 “(공인의 글자 및 규격)”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가.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고,
- 나. 정부기록보존소의 명칭을 변경된 국가기록원으로 개정 하고자 함.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62호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산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단체부문

2. 개인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시장·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산림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산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가.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등 산림분야 발전에 공헌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함으로써

나. 임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북의 산림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을 단체·개인 2개 부문으로 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규정함(제3조)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산림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산림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규정함(제4조)

다.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제6조)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63호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임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업인의 복지증진과 전문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 유관기관·단체,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인은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 ①도지사는 산림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산림사업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산림소득·생태관광시설·임도 등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산물 판로개척) 도지사는 유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임업인 양성) ① 도지사는 임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경영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는 임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업인의 역할) 임업인은 임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영혁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산촌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업 및 산촌진흥업
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기반조성 및 산촌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임업기술과제 선정 및 시상결정에 관한 사항
5. 임산물 수출, 가공, 유통,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가. 경북은 임야면적이 7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은 취약하고 산촌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나. 이에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과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산촌의 소득증진 등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 임업과 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
(제2조)
- 나. 사업의 지원, 임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제4조)
- 다. 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조례 제3264호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계층의 문화 향수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도지사는 저소득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이용금액은 개인별 연간 5만원상당으로 한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바우처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도지사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가.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 나.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으로 계층간의 문화격차해소와 도민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하고,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간 개인별 5만원 상당 범위에서 관람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제4조, 제5조)
- 나.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문화관련단체 및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제7조)

경 상 북 도

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규칙 제2688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 하부조직에 대한 세부분장사무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에서 제21호까지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2. 농업농촌관련업무 기획총괄
3.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산림연구과·산림사업과 및 수목원관리소”를 “산림환경과 및 산림사업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연구과장 및 수목원관리소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연구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하고,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절 중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5조 중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관리과 및 자원개발과”를 “관리운영과·자원개발과 및 수목원관리소”로,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과장”을 “관리운영과장”으로, “자원개발과장”을 “자원개발과장 및 수목원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관리과장”을 “관리운영과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 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목원관리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1-1번지에 둔다.

⑥ 수목원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4. 희귀·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및 점검
5. 도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
6. 수목원 조성·관리
7. 산림욕장 관리
8. 수목장림 설치 및 운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다양한 산촌소득 연구·개발, 임산물 마케팅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목원 기능이관과 시대흐름에 맞게 산림생태과학원의 명칭 변경과 농업관련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조정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제조정(수목원관리소 : 산림환경연구원 → 산림생태과학원)

나. 명칭변경(산림생태과학원 →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규칙 제2689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총계 중 합계란 “4,791” 을 “4,792” 로, 본청란 “1,289” 를 “1,290” 으
로 한다.

별표1 일반직 계 중 합계란 “1,392” 를 “1,393” 으로, 본청란 “1,014” 을
“1,015” 로 하고, 일반직 계 다음에 1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급	1	1			
----	---	---	--	--	--

별표1 3급 소계 중 합계란 “10” 을 “11” 로, 본청란 “9” 를 “10” 으로 하고,
일반직 3급 행정 중 합계란 “10” 을 “11” 로, 본청란 “9” 를 “10” 으로 하
고, 4급 소계 중 합계란 “75” 를 “74” 로, 본청란 “55” 를 “54” 로 하고, 일
반직 4급 행정 중 합계란 “28” 를 “27” 로, 본청란 “20” 를 “19” 로 하고, 5
급 소계 중 합계란 “298” 을 “302” 로, 본청란 “246” 을 “250” 으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 중 합계란 “140” 을 “143” 으로, 본청란 “117” 을 “120”
으로, 일반직 5급 행정·사회복지 중 합계란 “3” 을 “4” 로, 본청란 “3” 을
“4” 로 하고, 6급 소계 중 합계란 “502” 를 “498” 로, 본청란 “368” 을
“364” 로, 일반직 6급 행정 중 합계란 “202” 를 “199” 로, 본청란 “153” 을
“150” 으로, 일반직 6급 사회복지 중 합계란 “4” 를 “3” 으로, 본청란 “4”
를 “3” 으로 하고, 일반직 5급 농업·수의·농업 연구관란을 삭제하고, 일반직 5급

행정·시설·학예연구관란 다음에 농업·수의·수의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수의·수의연구관	1	1			
-------------	---	---	--	--	--

별표1 일반직 7급 중 전산 합계란 “21” 을 “20” 으로 사업소란 “2” 를 “1” 로 하고, 행정·전산 합계란 “6” 을 “7” 로, 사업소란 “0” 을 “1” 로 한다.

별표1 기능9급 소계 중 합계란 “70” 을 “71” 으로, 사업소란을 “34” 을 “35” 로 하고, 기능직 9급 중 기계원란 다음에 열관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열관리원	1				1
------	---	--	--	--	---

별표1 기능10급 소계 중 합계란 “46” 을 “45” 으로, 사업소란을 “18” 을 “17” 로 하고 기능직 9급 중 열관리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3년주기로 5급이상 정원의 상호교체 합의에 따라 시도간 정원조정을 하고 일부 직급·직렬을 조정코자 함

◇ 주요내용

정원의 총수 : 4,791명 → 4,792명(增1명)

- 본 청 : 1,289명 → 1,290명(+1)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규칙 제2690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물관리과”를 “물산업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자리경제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 교 통 과	1.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숙박업, 음식점,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2.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및 명령 검사권한 중 가.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부과·징수권 3. 도·소매업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관련 명령,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내지제4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권 4. 부정경쟁 방지업무에 대한 다음 의 권한 가.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5.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권한(시외버스 제외) 가. 사업면허 또는 등록 나. 수송 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및 인가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제외)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 관한법률」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제한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 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인가, 양도·양수제한, 법인 합병 신고 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과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업무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 버스운송사업에 한함) 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 조정시 관계시장·군수와 협의(부	동법 제10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3조제1항10호 동법 제23조제2항 동법 제7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동义市 시도지사에게 조정신 청) 파. 차령연장 하. 사업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거. 청문 너.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더.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청 접수처리 및 통보 6.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소 등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7. 자동차의 검사(자동차 검사 대행 자 및 지정정비업자가 행하는 검사는 제외)	동법 제84조 제2항 동법 제85조 동법 제86조 동법 제88조 동법 제94조 「교통안전법」 제54조 <삭 제> <삭 제> <삭 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8.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증	동법 제47조제1항	
	9.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수리 및 사용검정에 한함)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 지명령)	동법 제47조제2항·제4항	
	10.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동법 제69조	
	11.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84조	
	1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74조	
	13.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동법 제17조	
	다. 복합화물터미널에 따른 준용 규정	동법 제8조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가. 신규허가·변경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영업소 설치허가·허가증교부 · 개서 등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 통지의 수령 바. 운송가맹점 변경신고 사. 개선명령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카.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 금 운용계획 수립 파. 허가취소 청문 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거. 화물운송종사자자격의 취소의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동법 제3조제7항 동법 제6조 동법 제38조제2항 동법 제11조제11항 동법 제13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제1항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3조제3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문 너.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 태 진단 등 더. 과태료부과 · 징수 러. 휴업 및 폐업신고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규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영업소 설치허가 · 허가증교부 · 개서 등 라.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 통 지의 수령 바. 개선명령 사.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허가취소 · 사업정지 처분	동법 제47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1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제2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1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8조 제2항 동법 제28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카. 허가취소 청문 타.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 등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휴업 및 폐업신고	동법 제28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28조	
신성장 산업과	1.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허가변경·허가취소·영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2.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3.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4. 염제조업허가취소의 청문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염관리법」 제3조, 제23조 「광업법」 제83조 동법 제83조 및 제104조 「염관리법」 제24조 광업법 제4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 의 확인, 부분 접수 7. 광업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 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 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8. 광업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광업법 제84조 광업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광업법 제104조 제3항 제2호	
에너지 정책과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가. 법 제7조제2항 제9호의 규정 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78조제4항제11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보고의 징구 및 검사 3.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 명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 동법 제8조	

투자유치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노사 지 원 과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 동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국 제 통 상 과	1.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2.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제3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제4호	시장·군수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 화 예 술 과	1. 문화재 관람료 징수 2.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제1호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허가 4.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 안에서의 동법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5.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안에서의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6.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의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서 불사를 위한	동법 제6조제2항제2호 동법 제6조제2항제3호 동법 제6조제2항제5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8. 도서정가제와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체육 진흥과	1. 체육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시장·군수

농수산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 유통과	1. 양곡의 소유자, 매매업자 및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양곡관리법」 제2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 촌 개 발 과	1. 「국유재산법」에 의한 다음 사항 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관리 · 처분 나.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 ·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 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 의 열람, 복사, 등본 초본의 교부 청구 마.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 한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바.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 용 · 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제4호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72조, 제73조 동법 제30조, 제35조, 제36조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취소와 철회		
	사.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 용료 징수 및 면제	동법 제32조, 제34조	
	아.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관한 제재	동법 제39조	
	자.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 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동법 제40조	
	차.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 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동법 제42조제1항	
	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 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동법 제75조	
	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 요한 조치	동법 제74조	
	2.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 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	
	가. 예정지 조사	동법 제6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라.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승인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저수지 준설사업(한국농어촌공사 관 리구역 제외)에 대한 다음사항 가. 세부설계 실시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나.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의 변경승인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1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4호	
수 산 진 흥 과	1. 근해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근해형 망어업, 장어통발어업, 동해구트롤어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에 한하여, 동일한 어선에 위 어업과 중복하여 허가된 어업이 있는 경우 그 어선에 중복 허가된 당해 어업) 가. 근해어업 허가 나. 동 어업의 변경사항 신고 수리 다. 동 어업의 변경사항 허가 라. 동 어업의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제류와 그 허가의 취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함) 3. 법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	「수산업법」 제43조제1항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산물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제13조제1항 동법 제16조제5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지원 4.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 · 점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는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함)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 보수·개선명령 등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함)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2호 동법 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3호 동법 제23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5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동법 제42조	
	7.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 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	동법 제43조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7호	
	8.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 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수산물에 한함)	동법 제4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8호	
	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 (령 제40조제4항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 등에 한함)	동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9호	
	10.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동법 제23조제4항, 제2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 함	제1항, 제4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제10호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 색 환경과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 (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시장·군수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과징금 부과 2.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필요한 조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제30조제1항 동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82조제1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94조 동법 제37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부여 3.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4.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5.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6.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7. 유독물 영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의 수리 8.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 동 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 고의 수리 9.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수리 10. 보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출입 검사 등 11.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2.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동법 제22조제1항, 제2항 동법 제23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제2항 동법 제30조 동법 제39조 제1항 동법 제45조 제6호, 제7호, 제13호·제14호 동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3항 동법 제50조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한 청문의 실시 13.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5.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16.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17.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18. 환경측정기기 관련 3~5종 사업장 에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동일 사업자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 업장 중 1개 사업장이라도 1~2종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9.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	동법 제63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제20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 항 및 제3항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에 관한 설치 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시장·군수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제외)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사후관리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9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납부,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라.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마.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사.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 시설의 통지 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명세 서의 수리 차.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카.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타.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물의 접수 파. 사후관리 불이행자에 대한 담보	동법 제52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시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서의 수리 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 결정서의 교부 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계획서 접수 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의 납부 통보 머.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서의 수리 버.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용도 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동법 제31조제2항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어.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저.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 처.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2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나. 보고서의 제출 명령 2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의무사용 계획서 접수 및 내용 통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사무(다만, 대기·수질 중 1개 분야가 1~2종에 해당될	동법 제31조제3항 동법 제31조제6항 동법 제31조제9항 동법 제17조제3항, 제4항 동법 제38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제39조, 동법 시행령제28조제1호, 제2호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우 그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명령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사무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	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19조 제3항 동법 제23조 제2항 동법 제23조 제3항 동법 제24조 제2항 동법 제25조 제3항 동법 제29조 제1항 동법 제30조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한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25. 「환경보건법」에 의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7조 제2항제3항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동법 제29조 제1항 동법 제33조 제1항	
물산업과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및 공고 2.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 (다만, 동일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 는 경우와 1~2종 사업장에 설치된 공동방지시설로 폐수가 유입·처	「수도법」 제7조	시장·군수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리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다.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시의 허가 취소 등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점검 및 오염도 검사 등 마.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 사. 배출시설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자.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2항, 제3항 동법률 제34조 동법률 제35조제3항 동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동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동법률 제38조의4 동법률 제39조 동법률 제40조 동법률 제41조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또는 조업정지 명령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배출 시설의 인정 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파.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하.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거. 오염도 검사 의뢰 너. 위임권한에 대한 청문 더. 과태료 부과·징수 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머. 기준이내배출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조정 3.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변경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4.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 용 여부 확인	동법률 제42조 동법률 제43조, 동법률시행령 58조 동법률 제44조 동법률 제45조 동법률 제47조제1항 동법률 제68조제2항 동법률 제72조 동법률 제82조 동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0조 동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51조 동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법률 제61조제2항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해 양 개 발 과	1. 연안항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안항만 대장의 작성 비치 나. 동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다. 연안항에 관한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및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라. 타인 토지에의 출입 허가 마.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 바. <삭 제> 사.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아.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자.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차. 필요시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항만법」 제23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76조, 제77조 <삭 제> 동법 제7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2조 동법 제73조	시장·군수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등 카. 공용부담, 공익을 위한 처분으 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타.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2. 연안의 오염실태 점검(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구역 제 외) 3.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 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사업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 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연안정비 사업 중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쓰레기 또는 폐 선을 제거하는 사업, 해안편의점·휴	동법 제80조 동법 제93조 「연안관리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소관별	진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 한함)		
산 림 녹 지 과	1. 목재 합판 생산·이용증진 및 안정적 수급관리 2. 조림비의 반환조치 3. 산림용 종자, 묘목의 검사 및 출하 금지, 소독, 폐기 등의 조치 4.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가. 독립가의 선정 나. 독립가에 대한 지원 다.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동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47조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장·군수

보건복지여성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회 복지과 · 노 인 복지과 공동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등 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 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1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4조 및 동법 동법 시행령 제25조	시장·군수
사 회 복 지 과	1.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정신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3. 정신요양시설사업의 정지 명령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4. 정신요양시설장의 교체 명령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5. 정신요양 시설설치 허가의 취소	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6. 시설 입소 조치 후 결과보고 사항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 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 동 규칙 제6조제3항	
	7. 계속 입소심사청구서 제출에 관한 사항	동 규칙 제6조제3항	
	8.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동 규칙 제9조제1항	
	9.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 별변동에 관한 사항	동 규칙 제10조제1항	
	10.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승인, 입 소 정원 초과범위 및 비용 징수	동 규칙 [별표1]의2, 별표3] 의8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 관한 사항 11. 정신요양시설의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동 규칙 [별표3]의9	
여 성 청 소 년 가 족 과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 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1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업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제1항	
식의약품 안 전 과	1. 마약구입서 등 관리 2.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제53조	시장·군수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채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는 명령 2.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변 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동법 제31조제1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동법 제80조의2제2항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내용 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 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 확인·수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제2호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 확인·수리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 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 ·수리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3 다목, 제4호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의 교부·재교부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3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 업 등록말소 사. 시정명령·지시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 지 카. 청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의2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의2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1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6.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권한사항(다만, 적용범위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 시설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가.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 부동산의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2의2호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3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항 제2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처리 나.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마. 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 재산의 관리 위탁 바.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아.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 자.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차. 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갱신 카.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항 제2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멸실 보고		
도 로 철 도 과	1. 도로의 용도폐지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건설부 소관 도로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가. 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나. 도로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3.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접도구역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제한 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4. 건설기계 검사 등 5.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사항 가. 위임국도권리, 의무승계 등 나. 국도유지업무 다. 국도가 다른공작물의 효용을 겸하 는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 한 도로 공사시행 및 유지조치	「국유재산법」 제40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5조 「도로법」 제74조 동법 제50조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도로법 제4조 동법23조 제1항 단서 동법 29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국도가 다른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도로법 30조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동법 제31조	
	바.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38조	
	사. 도로점용공사 시행	동법 제40조	
	아. 점용료 부과, 징수	동법 제41조	
	자. 원상회복확인	동법 제43조	
	차. 비상재해시의 토지 사용 등	동법 제47조	
	카.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	동법 제49조 제4항	
	타. 국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연결허가	동법64조 제2항	
	파.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 징수	동법 제74조	
	하.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 비용의 부과, 징수	동법 제75조	
	거.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동법 제76조	
	너.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 징수	동법 제77조	
	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도로법 제8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러. 공익을 위한 처분 머. 수수료 징수 버. 부담금 등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서. 변상금 징수 어. 과태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84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90조, 제91조 동법 제94조 동법 제101조	
치 수 방 재 과	1.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 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2. 국가하천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명령, 원상회복 면제 의무 및 부속 공작물 등의 국·공유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3. 국가하천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	「하천법」 제5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75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우에 한한다.) 4.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점용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5.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점용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6. 국가하천에 있어서 죽목의 재식 및 이에 따르는 처분 7.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8. 국가하천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33조 제1항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69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9. 국가하천에 있어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70조	
	10. 국가하천에 있어서 보고의 수리 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75조	
	11. 구거(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포함)의 용도 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지원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중 시·군단위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이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나.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다.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 라.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에 관한 사항 마. 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상의 작성·관리 에 관한 사항 바.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 · 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 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아.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후원 추진 자.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 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사항		
안 전 정 책 과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철거명령 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동법 제16조제3항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 제22조제3항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 제23조제2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사·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동법 제23조제3항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새 마을 봉 사 과	1.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 설립인가의 취소 2. 새마을금고의 정관 변경의 인가 3.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4.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5.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새마을금고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62조 동법 제11조제6항 동법 제59조제1항 동법 제59조제2항 동법 제59조제3항 내지 제5항	시장·군수
회계계약 심 사 과	1. 국유 일반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국유 재산의 관리·처분	동법 제9조, 제41조, 제42 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 38조제1항 및 제3항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리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다.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사무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라. 국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부 과 징수	동법 제46조, 제47조	
	마. 매각	동법 제48조부터 제53조	
	바. 신탁	동법 제58조	
	사. 대장과 실태조사	동법 제66조	
	아. 변상금 징수	동법 제72조,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자. 불법시설물의 철거	동법 제74조	
	차.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동법 제77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77조	
	카.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동법 제25조, 제42조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206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정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19호(2011. 01. 06)로 고시한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내용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정정사유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의 면적 표기 오류 및 조서 누락, 비도시지역 녹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의 기정 반영 오류에 따른 정정

2. 정정 고시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총괄

(당초)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8,324	-	384,048,324	100.00	
도 시 지 역	계	30,514,468	-	30,514,468	7.95	
	소 계	2,872,975	-	2,872,975	0.75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주거지역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60,775	-	1,360,775	0.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476,200	-	476,200	0.1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0.00	
		준주거지역	1,036,000	-	1,036,000	0.27	
	상 업 지 역	소 계	143,800	-	143,800	0.04	
		중심상업지역	-	-	-	0.00	
		일반상업지역	143,800	-	143,800	0.04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근린상업지역	-	-	-	0.00	
		유통상업지역	-	-	-	0.00	
	공 업 지 역	소 계	1,815,168	-	1,815,168	0.47	
		전용공업지역	-	-	-	0.00	
		일반공업지역	1,677,768	-	1,677,768	0.43	
		준공업지역	137,400	-	137,400	0.04	
	녹 지 지 역	소 계	25,682,525	-	25,682,525	6.69	
		보전녹지지역	-	-	-	0.00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생산녹지지역	1,044,510	-	1,044,510	0.27	
		자연녹지지역	24,638,015	-	24,638,015	6.42	
관 리 지 역		소 계	94,020,745	-	94,020,745	24.48	
		보전관리지역	51,101,884	감) 14,957	51,086,927	13.30	
		생산관리지역	2,235,642	-	2,235,642	0.58	
		계획관리지역	40,683,219	감) 132,922	40,550,297	10.56	
		관리지역 (미세분)	-	증) 147,879	147,879	0.04	
농 립 지 역			258,297,111	-	258,297,111	67.26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1	

(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8,324	-	384,048,324	100.00	
도 시 지 역	계	30,514,468	-	30,514,468	7.95	
	주 소 계	2,872,975	-	2,872,975	0.75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60,775	-	1,360,775	0.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476,200	-	476,200	0.1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0.00	
		준주거지역	1,036,000	-	1,036,000	0.27	
상 업 지 역		소 계	143,800	-	143,800	0.04	
		중심상업지역	-	-	-	0.00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상업지역	143,800	-	143,800	0.04	
		근린상업지역	-	-	-	0.00	
		유통상업지역	-	-	-	0.00	
공 업 지 역		소 계	1,554,168	-	1,554,168	0.40	
		전용공업지역	-	-	-	0.00	
		일반공업지역	1,416,768	-	1,416,768	0.36	
		준공업지역	137,400	-	137,400	0.04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 지 지 역	소 계		25,682,525	-	25,682,525	6.69	
	보전녹지지역		-	-	-	0.00	
	생산녹지지역		1,044,510	-	1,044,510	0.27	
	자연녹지지역		24,638,015	-	24,638,015	6.42	
	미 지 정		261,000	-	261,000	0.07	
관 리 지 역	소 계		94,020,745	-	94,020,745	24.48	
	보전관리지역		51,101,884	감) 14,957	51,086,927	13.30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생산관리지역	2,235,642	-	2,235,642	0.58	
	계획관리지역	40,683,219	감) 132,922	40,550,297	10.56	
	관리지역 (미세분)	-	증) 147,879	147,879	0.04	
농 립 지 역		258,297,111	-	258,297,111	67.2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	1,216,000	0.31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당초)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기정	녹지	경관, 완충녹지	5개소	64,725	-	64,725	-	
소계	기정	녹지	경관녹지	1개소	30,580	-	30,58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고령읍 자산리 959 일원	30,580	-	30,580	-	자산 취락지구
소계	기정	녹지	완충녹지	4개소	34,145	-	34,145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월성리 산112 일원	23,830	-	23,830	고령군 고시 제01-178호 (01. 08. 17)	다산 관광지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송곡리 산15-3 일원	9,391	-	9,391	경북고 제335호 (91. 09. 04)	축산물 공판장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송곡리 787	455	-	455	경북고 제335호 (91. 09. 04)	축산물 공판장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송곡리 787 일원	469	-	469	경북고 제335호 (91. 09. 04)	축산물 공판장

(변경)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기정	녹지	경관, 완충녹지	2개소	54,410	-	54,410	-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기정	녹지	경관녹지	1개소	30,580	-	30,58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고령읍 자산리 959 일원	30,580	-	30,580	-	자산 취락지구
소계	기정	녹지	완충녹지	1개소	23,830	-	23,830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다산면 월성리 산112 일원	23,830	-	23,830	고령군 고시 제01-178호 (01. 08. 17)	다산 관광지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당초)

《 고령 도시지역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고령읍 고아리 424-1 일원	30,520	감)953	29,567	경북고 제85호 (96. 7. 1)	자연 녹지지역

《 다산 도시지역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다 산 하수종말처리장	다산면 좌학리 993 일원	36,057	-	36,057	경북고 제480호 (08. 10. 16)	개발 제한구역

(변경)

《 고령 도시지역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고령읍 고아리 424-1 일원	30,520	감)953	29,567	경북고 제85호 (96. 7. 1)	자연 녹지지역

《 다 산 도 시 지 역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다 산 하수종말처리장	다산면 좌학리 993 일원	36,057	-	36,057	경북고 제480호 (08. 10. 16)	개발 제한구역

《 비도시지역 》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오수처리장	다산면 송곡리 1043 일원	1,310	-	1,310	고령군 고시 제01-178호 (01. 08. 17)	다산 관광지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당초)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4개소		7,322	증)1,163	8,485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장	다산면 송곡리 1043 일원	1,310	-	1,310	고령군 고시 제01-178호 (01. 08. 17)	다산 관광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진면 반운리 748 일원	-	증)1,764	1,764	-	개진 농공단지
기정	3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진면 신안리 산15 일원	1,425	-	1,425	고령군 고시 제00-227호 (00. 12. 30)	개진 석산개발
변경	4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쌍림면 안림리 산61-3 일원	4,587	감)601	3,986	경북고 제171호 (91. 05. 06)	안림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변경)

《 비도시지역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3개소		6,012	증)1,163	7,175		
신설	2	수질오염방 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진면 반운리 748 일원	-	증)1,764	1,764	-	개진 농공단지
기정	3	수질오염방 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진면 신안리 산15 일원	1,425	-	1,425	고령군 고시 제00-227호 (00. 12. 30)	개진 석산개발
변경	4	수질오염방 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쌍림면 안림리 산61-3 일원	4,587	감)601	3,986	경북고 제171호 (91. 05. 06)	안림중소기 업협동화단 지

※ 정정고시 내용외의 타 사항은 당초 고시내용과 동일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 관계인은 고령군청 도시과(054-950-634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1-20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공사의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등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강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수해상습지에 대하여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생활 기반의 안정을 도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사 업 량 : 하천정비 L= 7.39km
- 사 업 비 : 10,889백만원(도급4,050, 관급5,087, 폐기물처리84, 보상비 1,668)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60%:지방비40%)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일원(지방하천 영강)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경상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5. 하천공사의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1.02.22~ 2014.02.2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10,889	298	995	4,000	5,596	

9.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공종 월별	보합 (%)	추진계획(월)												비고
		3월	6월	9월	12월	15월	18월	21월	24월	27월	30월	33월	36월	
측제공	53.97	2.00	2.73	2.93	0.73	13.00	15.00	13.00	4.58					
호안공	15.87		0.88	0.90	0.22	2.50	3.50	2.50	2.50	2.87				
구조물공	8.65			0.84	0.43	2.50	2.50	2.38						
차수공	9.06						3.00	3.00	3.06					

공종 월별	보합 (%)	추진계획(월)												비고
		3월	6월	9월	12월	15월	18월	21월	24월	27월	30월	33월	36월	
포장공	7.51								1.00	2.50	2.00	2.01		
부체도로공	0.83			0.14	0.02					0.20	0.40	0.07		
부대공	4.11	0.13	0.13	0.13	0.13	0.50	0.50	0.50	0.40	0.36	0.25	0.25	0.83	
계획/누계	100.00	2.13	3.74	4.94	1.53	18.50	24.50	21.38	11.54	5.93	2.65	2.33	0.83	
		2.13	5.87	10.81	12.34	30.84	55.34	76.72	88.26	94.19	96.84	99.17	1000	

10. 준공된 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관리자 : 경상북도 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상주시장, 문경시장-하천부서

※하천 부속물을 제외한 시설물 : 상주시장, 문경시장 - 해당 시설물관리 부서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사업시행기관(경상북도 치수방재과) 및 상주시 재난관리팀,

문경시 건설방재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1. 5. ~ 2014. 2.

○ 보상절차 및 방법 : 상주시 재난관리팀, 문경시 건설방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지급

○ 보상가 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

13. 도시관리계획(하천)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합계		
변경	4	영강	지방 하천	함창읍 덕통리	사벌면 퇴강리	-	9.19	67 ~ 456	1,822,388	증 227,698	2,050,086	'10.6.24	상주시
변경	6	영강	지방 하천	영신동 632 번지 일원	영순면 말응리 667 번지 일원	영순면 김용리	9.80	67 ~ 456	1,890,000	증 51,890	1,941,890	'10.12.6	문경시

나.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하 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영강	하천신설 B= 310~435m L=6,346m(덕통제1,197, 신덕제4,005, 금곡제 1,144) A= 227,698㎡(증)	영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따른 하천시설 결정 (변경)- 상주시 구간

도 면 표시번호	하 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영강	하천신설 $B = 310 \sim 435m$ $L = 1,958km$ (마산제1,715, 울곡제243) $A = 51,890m^2$ (증)	영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따른 하천시설 결정 (변경) - 문경시 구간

다. 결정도면 및 지형승인도면 : 게재생략

⇒ 우리 도 치수방재과 및 상주시 재난관리팀, 문경시 건설방재과 비치하여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경북도청 치수방재과(053-950-3642) 및 상
주시 재난관리팀(054-537-7611), 문경시 건설방재과(054-550-6538)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덕통제							368,067	9,915.6			
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90	구	구	3,587.40	881.10	국	-	농림 수산부
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3	천	답	783.00	28.2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24	이정재	
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81-3	답	답	136.00	13.0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이장옥	
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73-5	답	답	1,438.30	21.69	경상북도 문경시 홍덕동 701-26	임장수외1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7-1	천	답	1,190.00	706.5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58	홍종대	
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82	답	답	3,059.50	18.55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29-6	조영화	
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8-1	임	임	2,628.00	647.74	국	-	기획 재정부
8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82-1	답	답	1,426.80	5.9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59	김창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82-2	답	답	1,834.80	30.4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59	김창순	
1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606	도	도	5,004.00	61.02	국	-	농림 수산부
1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613	구	구	4,656.20	28.32	국	-	농림 수산부
1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80- 23	도	도	-	9.97			미발급
1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72-1	천	답	982.00	377.6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권동태명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3-5	답	답	2,007.00	259.6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58	김석범	
1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2-1	답	답	648.00	350.41	국	-	상주시
1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3-6	답	답	1,101.00	110.6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신영호	
1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2-2	답	답	364.00	364.9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7	한문교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8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1	전	전	2,929.00	192.6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7	반윤해	
1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22-2	답	답	1,174.00	263.1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신영호	
2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8-1	도	도	2,582.00	303.41	국	-	국토 해양부
2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80- 28	도	도	112.00	64.94	국	-	농림 수산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2-3	전	전	3,855.00	784.7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권중희	
2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1	답	답	1,435.00	237.0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신영호	
2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2-1	답	답	1,289.00	293.3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신영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2-2	답	답	1,923.00	417.9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신영호	
2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2-2	답	답	2,040.00	445.8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58	한도석	
2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70-1	구	구	2,214.00	1,341.47	국	-	농림 수산부
28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2-3	답	답	685.00	207.59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79-5	김성아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4-3	전	전	1,165.00	383.1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10	이남철	
3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4-4	제	제	290.00	290.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210	석복	
3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5-1	전	전	114.00	4.1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김운진 외 3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3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5-2	제	제	16.00	16.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25	석복	
3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5-3	전	전	543.00	57.7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김운진 외 3인	
3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	천	천	4,046.00	648.9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210	석복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3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5-4	전	전	1,103.00	26.86	국	-	상주시
3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4-1	천	천	309,706	20.53	국	-	국토 해양부
신덕제							1,395,659	95,074.87			
3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4-1	천	천	309,706	564.83	국	-	국토 해양부
38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7	천	천	80,202	6,422.37	국	-	국토 해양부
39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1	전	전	8,748.00	1,027.3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	임남일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40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6	도	도	754.00	65.20	국	-	국토 해양부
41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3	전	전	7,243.00	357.2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	임남일	
42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1	임	전	2,235.00	783.8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태봉리 1	박종구	
43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5-1	임	임	4,684.00	821.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태봉리 1	석복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44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8	구	구	2,509.00	1,778.29	국	-	농림 수산부
4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	임	임	28,615.00	9,998.7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32	함창태봉리 새마을회	
4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	답	답	212.00	9.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37	정영무 외 1인	
4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50-3	도	도	169.00	90.87	국	-	국토 해양부
4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50-4	구	구	50.00	8.91	국	-	농림 수산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4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7	잡	잡	52.00	47.69	국	-	상주시
5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1	답	답	2,102.00	102.7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54	이상숙	
5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8	답	답	21.00	21.00	국	-	상주시
52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2	답	답	3,110.00	140.8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69	박철성 외 1일	
5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9	답	답	90.00	88.93	국	-	상주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5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8-1	구	구	-	344.16			미발급
5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	답	답	850.00	795.1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18	이상노 외 3인	
5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3	답	답	4,128.00	187.69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146-5	임영진	
5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10	답	답	150.00	148.73	국	-	상주시
5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3-1	도	도	221.00	218.47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5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4	답	답	1,691.00	81.4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100 코오롱 아파트 1015호	박도연	
6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11	답	답	61.00	60.49	국	-	상주시
6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5	답	답	2,353.00	113.2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24-8	김주식	
62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9-12	답	답	90.00	90.00	국	-	상주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6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9	답	답	7,312.00	294.5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41	김안선이	
6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2-1	천	천	135,726.00	17,662.11	국	-	국토 해양부
6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9-1	답	답	262.00	262.00	국	-	상주시
6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8	답	답	3,083.00	84.6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18	이상노 외 3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6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8-1	답	답	67.00	66.74	국	-	상주시
6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6-1	답	답	2,245.00	14.49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888-6	이한우	
6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76	답	답	3,686.00	84.5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07	장동석	
7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77	답	답	5,322.00	356.1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16	이상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7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78	도	도	483.00	32.09	국	-	국토 해양부
72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79	답	답	1,904.00	142.1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57	안종월	
7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0	답	답	1,180.00	89.0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5	백종기	
7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	답	답	1,260.00	91.3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5	백종기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7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61	천	천	7,564.00	9.30	국	-	국토 해양부
7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2	답	답	2,545.00	211.0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41	배정연	
7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4	답	답	631.00	56.9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41	배정연	
7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5	답	답	1,957.00	183.7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33-2	황원하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7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6	답	답	1,012.00	94.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33-2	황원하	
8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3-1	답	답	228.00	228.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황원하	
8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8	답	답	3,041.00	276.5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33-2	황원하	
82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66	도	도	3,504.00	1,634.68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8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64	구	구	14,069.00	1,408.65	국	-	농림 수산부
8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4-2	답	답	56.00	48.6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33-2	황원하	
8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4-1	답	답	1,855.00	129.5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 안산고잔 7차 푸르지오 711-304	김영학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8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9	구	구	2,311.00	1,737.22	국	-	농림 수산부
8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4-2	답	답	1,230.00	109.6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36	정휘석	
8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5	답	답	1,537.00	137.5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36	정휘석	
8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8-1	천	천	787.00	788.9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5	이상수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6	답	답	1,570.00	133.6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244	오순이	
9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7-1	답	답	661.00	92.6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83	김덕선	
92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7-2	천	천	228.00	221.4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34	홍규식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09	답	답	1,617.00	108.9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83	김상호	
9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9-1	천	답	188.00	177.3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34	홍규식	
9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0-1	답	답	4,248.00	296.58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206-60	오상용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9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20-1	전	전	774.00	742.34	국	-	기획 재정부
9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0-3	답	답	2,102.00	130.31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19	박선목	
98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69	도	도	268.00	14.75	국	-	국토 해양부
99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1	답	답	2,060.00	161.14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19	박선목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00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21-1	답	답	317.00	316.9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28	김옥태	
101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2	답	답	2,060.00	88.8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92	최영식	
10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7-1	천	천	641.00	553.87	국	-	
10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3	답	답	1,511.00	53.1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73	서영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0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113-1	답	답	2,469.00	5.5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8 상록빌라 302	김장섭	
10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5	답	답	162.00	69.4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8 상록빌라 302	김장섭	
10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1	답	답	777.00	170.4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28-52	김장섭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0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21	도	도	688.00	684.57	국	-	국토 해양부
10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6	답	답	536.00	67.7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8 상록빌라 302	김장섭	
10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6-1	천	천	2,321.00	1,609.22	국	-	국토 해양부
11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2	답	답	655.00	59.4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73	서영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1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3	답	답	879.00	9.7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85	이창희	
11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5-4	답	답	1,197.00	50.70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437 양산 동원타운 101-905	김상진	
11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22	구	구	1,412.00	425.60	국	-	국토 해양부
11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45	도	도	1,944	6.54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1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4-1	천	천	436.00	430.98	국	-	국토 해양부
11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20-1	구	구	1,021.00	309.62	국	-	농림 수산부
11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4-5	전	전	76.00	71.32	국	-	기획 재정부
11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54-3	전	전	3.00	0.31	국	-	기획 재정부
11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2-1	천	천	3,388.00	174.68	국	-	국토 해양부
12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3-1	전	전	99.00	78.6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	이상진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2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4-1	전	전	10.00	5.32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	이상진	
12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2-2	전	전	377.00	370.96	국	-	상주시
12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0-1	답	답	1,868.00	87.94	경기도 문경시 모전동 74-19	남규옥	
12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40-2	전	전	1,997.00	83.34	경기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22-40	김경자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2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	천	천	560,602.00	16,879.40	국	-	국토 해양부
12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5	임	임	27,414.00	492.18	경기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김리진 외 43인	
12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5-4	임	임	3,009.00	2,981.65	국	-	경상북도
12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5-3	임	임	47,413.00	4,029.78	국	-	경상북도
12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197-1	임	임	1,792.00	115.92	국	-	기획 재정부
13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2	천	천	3,572.00	22.96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3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3-3	천	천	304.00	285.00	국	-	국토 해양부
13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2-1	천	천	633.00	627.75	국	-	국토 해양부
13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3-1	천	천	420.00	400.71	국	-	국토 해양부
13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3-2	천	천	57.00	51.99	국	-	국토 해양부
13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3-4	천	천	3.00	2.05	국	-	국토 해양부
13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5-5	임	임	176.00	137.83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3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5-4	임	임	541.00	533.34	국	-	기획 재정부
13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5-1	임	임	698.00	0.64	국	-	기획 재정부
13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4-6	임	임	52.00	46.64	국	-	기획 재정부
14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4-5	임	임	558.00	542.51	국	-	기획 재정부
14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3-4	임	임	270.00	268.05	국	-	기획 재정부
14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3-1	임	임	656.00	37.26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4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4-1	임	임	861.00	2.32	국	-	기획 재정부
14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2-4	임	임	188.00	188.00	국	-	기획 재정부
14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2-1	임	임	592.00	34.78	국	-	기획 재정부
14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1	천	천	17,405.00	1,154.70	국	-	국토 해양부
14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5-5	임	임	869.00	850.95	국	-	경상북도
14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1-1	전	전	181.00	181.00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군 영순면 울곡리	손명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4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1	전	전	2,953.00	76.24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파트 101동 607호	박정수	
15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7-1	전	전	175.00	173.91	국	-	경상북도
15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7	전	전	1,194.00	26.56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군 영순면 울곡리 517	오세현	
15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6-3	전	전	239.00	237.8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73	서찬섭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5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6	임	임	42.00	41.73	국	-	기획 재정부
15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5	임	임	390.00	366.08	국	-	기획 재정부
15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1	임	임	107.00	56.90	국	-	기획 재정부
15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2-1	임	임	483.00	134.53	국	-	기획 재정부
15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5	임	임	313.00	310.91	국	-	기획 재정부
15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1	임	임	226.00	9.73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5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2-5	제	제	-	191.64			미발급
16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2	전	전	92.00	74.58	국	-	기획 재정부
16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6	전	전	91.00	91.00	국	-	기획 재정부
16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2-2	전	전	186.00	186.00	국	-	기획 재정부
16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2	전	전	400.00	160.32	국	-	기획 재정부
16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06	전	전	1,876.00	63.30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6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06-2	제	제	-	100.46			미발급
16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06-1	제	제	71.00	69.57	국	-	기획 재정부
16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2-3	제	제	203.00	201.08	국	-	기획 재정부
16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2-4	전	전	299.00	3.39	국	-	기획 재정부
16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3	제	제	315.00	308.25	국	-	기획 재정부
17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3-4	전	전	259.00	15.13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7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6	전	전	1,203.00	157.7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73	서찬섭	
17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4	전	전	187.00	18.26	국	-	기획 재정부
17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3	제	제	368.00	368.00	국	-	기획 재정부
17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6-1	제	제	289.00	276.84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 아파트 1113동 504호	김우분 외6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7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6-2	천	전	85.00	12.0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 아파트 1113동 504호	김우분 외6인	
17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8	전	전	696.00	178.4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73	서찬섭	
17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8-1	제	제	677.00	644.15	국	-	경상북도
17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7	제	제	21.00	19.81	국	-	경상북도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7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2	전	전	415.00	83.15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파트 101동 607호	박정수	
18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3	전	전	440.00	113.19	국	-	재정 경제부
18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1	전	전	563.00	113.90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파트 101동 607호	박정수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8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6-2	전	전	1,064.00	39.46	국	-	기획 재정부
18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7-4	제	제	143.00	136.40	국	-	경상북도
18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7-3	전	전	925.00	144.4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00	서영팔	
18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8-1	제	제	-	663.48			미발급
18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8	천	천	2,579.00	142.91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8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9-7	제	제	-	0.07			미발급
18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9-6	제	제	19.00	13.83	국	-	기획 재정부
18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10	제	제	563.00	209.57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아파트 101동 607호	박정수	
19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6	제	제	75.00	71.42	국	-	경상북도
19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8	제	제	201.00	190.09	국	-	경상북도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9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9	제	제	-	239.00			미발급
19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8-2	전	전	1,503.00	5.37	국	-	경상북도
금곡제							661,805.00	26,154.98			
19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92	전	전	520.00	55.68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455 부영 아파트 604-805	안수기	
19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3	제	제	406.00	406.00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9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17	전	전	3,572.00	430.90	국	-	기획 재정부
19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2	제	제	128.00	128.00	국	-	기획 재정부
19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6	전	전	1,917.00	89.9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1	김세영	
19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69	도	도	1,012.00	213.51	국	-	경상북도
20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	천	천	560,602.00	5,784.25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0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3	제	제	27,602.00	10,331.16	국	-	국토 해양부
20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79	도	도	856.00	2.70	국	-	경상북도
20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39	전	전	48.00	6.04	국	-	기획 재정부
20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82	전	전	20.00	5.86	국	-	경상북도
20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4	제	제	436.00	436.00	국	-	기획 재정부
20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6	전	전	67.00	65.37	국	-	기획 재정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0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84	제	제	299.00	292.71	국	-	기획 재정부
20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8	제	제	178.00	178.00	국	-	국토 해양부
20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5	전	전	1,380.00	74.10	국	-	기획 재정부
21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38	천	천	523.00	428.39	국	-	기획 재정부
21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0	전	전	230.00	75.4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1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7	제	제	1,267.00	1,267.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21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3	전	전	22.00	22.00	국	-	상주시
21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37	천	천	711.00	16.40	국	-	기획 재정부
21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1	전	전	651.00	98.5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1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8	전	전	1,770.00	484.5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21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4	전	전	68.00	68.00	국	-	상주시
21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2	전	전	870.00	90.8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21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9	제	전	588.00	588.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2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5	전	전	70.00	70.00	국	-	상주시
22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3	전	전	1,231.00	41.2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22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81	제	전	474.00	474.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22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80	천	전	534.00	276.3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2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6	전	전	88.00	88.00	국	-	상주시
22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83	제	전	165.00	158.8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22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82	전	전	134.00	134.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면 척동리 27-3	박두수	
22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7	전	전	16.00	16.00	국	-	상주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2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44	전	전	1,409.00	5.3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22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51	전	전	66.00	66.00	국	-	상주시
23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0	전	전	406.00	99.6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23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52	전	전	4.00	3.10	국	-	상주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3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4	전	전	1,626.00	75.7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46	서수만	
23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3	전	전	6,785.00	238.5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35	신동식	
23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 268	전	전	228.00	228.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35	신동식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3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9	제	제	1,034.00	1,034.00	국	-	국토 해양부
23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3-1	제	제	15.00	15.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35	신동식	
23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2	임	임	36,099.00	16.0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신현옥 외 33인	
23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61	전	전	1,850.00	0.8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535	신동식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3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2-1	제	제	359.00	359.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김이진 외 43인	
24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2-2	임	임	1,558.00	455.2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김이진 외 43인	
24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1	제	제	1,284.00	658.98	국	-	국토 해양부
242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954-33	제	제	586	1.62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4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42	천	천	41.00	0.08	국	-	국토 해양부
마산제							85,670.00	25,663.57			
245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9-3	제	제	43	24.79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83	임병국	
246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20-1	제	제	876	674.39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83	임병호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47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06	답	답	1,117	253.0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83	임병호	
248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	도	도	436	1.29	국	-	농림 수산부
249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	구	구	1,326	91.94	국	-	농림 수산부
250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335-2	제	제	7,702	4,152.84	국	-	국토 해양부
25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0	답	답	413	81.09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65	최상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52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2-3	답	답	2,502	5.68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65	최상순	
253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20-3	도	도	2,721	52.25	국	-	농림 수산부
25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2	답	답	8,355	176.54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265	현낙선	
25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41	구	구	4,820	418.68	국	-	농림 수산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5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1	도	도	142	143.66	국	-	국토 해양부
25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8	도	도	400	135.26	국	-	국토 해양부
258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99	답	답	3,455	99.48	경상북도 점촌시 점촌동 284-103	정휘빈	
25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06	답	답	3,002	80.02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70	김기철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6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13	답	답	2,995	70.91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70	김기철	
26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4-6	천	천	27,445	16,163.60	국	-	국토 해양부
26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42	도	도	3,045	215.67	국	-	국토 해양부
26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26	답	답	2,955	84.4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70	김기철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6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27	답	답	3,114	86.59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70	홍의식	
26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35	답	답	2,129	12.11	경상북도 점촌시 점촌동 250-49	박노동	
26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536	답	답	2,955	16.65	경상북도 문경군 영순면 의곡리 949	권철훈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67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1085-8	구	구	205	95.68	국	-	농림 수산부
268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1046-2	천	천	1,749	1,546.62	국	-	국토 해양부
269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1086-1	도	도	667	129.29	국	-	국토 해양부
270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976-1	임	임	476	401.95	국	-	경상북도
271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977-1	전	전	129	100.27	국	-	경상북도
272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978-1	천	천	20	7.01	국	-	국토 해양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73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1046-3	천	천	400	309.18	국	-	국토 해양부
274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704-10	답	답	76	32.70	국	-	문경시
울곡제							1,284,294.00	52,795.45			
275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1002-7	천	천	658,874.00	16,682.76	국	-	국토 해양부
27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	천	천	560,602.00	22,956.08	국	-	국토 해양부
27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35-3	임	임	47,413.00	10,766.22	국	-	경상북도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7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1	천	천	17,405.00	2,390.39	국	-	국토 해양부
하천내 사유지							69,987	69,987			
27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	천		1,273	1,273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84	문삼성	
28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1-1	천		1,527	1,52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68	신기성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8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1-2	천		1,031	1,031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99	양경득	
28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3-1	천		936	936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623	김영옥	
28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7-2	임		5,190	5,19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209	최희달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84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7-1	임		7,253	7,253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209	최희달	
285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4	천		4,638	4,63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160	박봉춘	
28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22	천		447	44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김진철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87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6	천		5,286	5,286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사리 198	김관진	
288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0	천		774	774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58	김한범	
289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9	답		1,947	1,947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719-1	남정일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90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8	천		3,435	3,435	문경시 점촌읍 창리	김석구	
29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5	천		3,719	3,719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홍치연	
29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34	천		3,058	3,058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홍치연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9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2-1	천		2,145	2,145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68	권중희	
294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30	천		1,567	1,567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737	홍병흠	
295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30-1	천		387	387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737	홍병흠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96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4	천		5,530	5,53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737	홍종해	
297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5	천		810	81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78	홍영철	
298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3-1	천		235	235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25	서창복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99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5-1	천		516	516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78	홍영철	
300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6-1	천		512	512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02	이술복	
301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47-1	천		793	793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743	홍윌흙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302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48-1	천		1,534	1,534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읍 홍덕리 258-17	전화룡	
303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53	천		1,164	1,164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668	홍봉흠	
304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54	천		992	992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668	홍봉흠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305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50-1	천		1,821	1,821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28-34	서두삼	
306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52-1	천		1,527	1,527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219	박영신	
307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956-1	천		5,772	5,772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군 영순면 울곡리 678	홍규일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현실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308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53-1	천		1,818	1,818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68	홍봉흠	
309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954-1	천		2,350	2,350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678	홍봉흠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번호	시	소재지			종류	수령	수량및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소	성명	
덕통제										
1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4-3전	배나무	8년생	35주			D=19~22cm, H=1.8~2m
					감나무	8년생	1주			D=16cm, H=4m
2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4-4제	관정		1공			
3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5-3전	감나무	8년생	3주			D=16cm, H=4m
신덕제										
4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1전 외 2필지	비닐 하우스		96㎡			

번호	시	소 재 지			종류	수령	수량및 면적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 소	성명	
5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7천	사과나무	10년	41주			
6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1전	사과나무	10년	78주			
7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75-1전	창고		19㎡			
8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6도	사과나무	13년	5주			
9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3전	사과나무	12년	36주			
10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237천	창고		10㎡			
11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임	소나무		4주			

번호	시	소재지			종류	수량	수량및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소	성명	
12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1임	표지석		1개			
13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2-1천	차단시설		1개			
14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346-1답	사과나무	5년	2주			
15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2-1천	사과나무	5년	58주			
16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12-1천	차단시설		1개			
17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866도	복숭아 나무	8년생	6주			
					감나무	8년생	10주			

번호	시	소재지			종류	수량	수량및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소	성명	
					자두나무	8년생	1주			
1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천	관정		1공			
1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천	관정		1공			
20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20-6제	관정		1공			
금곡제										
21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69도 외 2필지	창고		120㎡			
22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3제	창고		5㎡			

번호	시	소 재 지			종류	수령	수량및 면적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 소	성명	
23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3제	전사		82㎡			
24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3제	호두나무	8년생	1주			
25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63제	차단시설		1개			
26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268전 외 4필지	창고		107㎡			
27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42-1제	전사		6㎡			
28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71제 외 2필지	양계사		80㎡			

번호	소 재 지				종류	수량	수량및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 소	성명	
29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1천	감시 카메라		1기			
마산제										
30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20-1제	감나무	8년생	5주			
					모과나무	8년생	2주			
					호두나무	8년생	1주			
					대추나무	8년생	2주			
31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구 외 1필지	창고		21㎡			

번호	소 재 지				종류	수령	수량및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	읍면	리동	지번 및 지목				주 소	성명	
32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구 외 1필지	전사		6㎡			
33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구 외 2필지	창고		62㎡			
34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구 외 2필지	감나무	8년생	4주			
35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117-2구 외 2필지	비닐 하우스		113㎡			
36	상주시	함창읍	덕통리	464-6천	관정		1공			
울곡제										
37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1002-7천	관정		1개소			

경상북도 고시 제2011-208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남면 초곡리 산69번지 일원에 154kV 농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 고압선(철탑부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고압선 ③	전기공급설비	고압선 (철탑)	김천시 남면 초곡리 산69	-	352	352	-	

- 고압선(선하부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신설	③-선하지 ①	전기 공급 설비	고압선 (선하부지)	김천시 남면 용전리 산46-1	김천시 남면 초곡리 835	-	1.03	11,423	-	154kv 폭원 16m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제재 생략)

※ 『국가지리정보 보물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음.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1-209호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세아조각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명 칭 : 세아조각 수목원

2.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산28번지 외23필지

3. 면 적 : 3.70ha

4. 수목원 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내역 : 붙임

5.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 연월일 : 2011년 5월 일

6. 승인내역 및 승인조건 : 붙임

붙 임 : 1. 수목원 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내역 : 붙임

2. 승인내역 및 승인조건 : 붙임

수목원 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내역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군.면	읍.리				당 초	변 경		
계					408,458	36,968	36,968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군.면	읍.리				당 초	변 경		
1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산23	임	155,901	3,540	4,487	이준엽	
2	"	"	산25-1	임	180,195	12,476	17,206	이만갑	
3	"	"	산25-7	제	301	-	265	국(건설부)	
4	"	"	산28	임	42,843	13,645	5,356	이준엽	
5	"	"	산54	구	105	827	105	국(농수산부)	
6	"	"	산54-1	임	722	-	722	이만갑	
7	"	"	36-1	천	12	-	12	이만갑	
8	"	"	36-3	천	537	-	87	국(건설교통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군.면	읍.리				당 초	변 경		
9	"	"	36-4	답	362	-	258	국(건설교통부)	
10	"	"	37	답	4,272	4,933	4,272	이만갑	
11	"	"	37-1	답	171	-	84	국(건설부)	
12	"	"	37-2	답	100	-	100	국(철곡군)	
13	"	"	37-3	답	561	-	156	이만갑	
14	"	"	38-1	답	127	-	83	국(건설부)	
15	"	"	39-4	답	2	-	2	국(건설부)	
16	"	"	39-5	답	138	-	138	국(건설부)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군.면	읍.리				당 초	변 경		
17	"	"	39-6	답	497	-	405	국(건설교통부)	
18	"	"	39-7	답	103	-	103	국(건설교통부)	
19	"	"	47	천	1,226	-	168	국(건설부)	
20	"	"	48	전	1,729	418	418	이만갑	
21	"	"	49	임	485	485	449	이만갑	
22	"	"	408-1	천	17,772	549	1,795	국(건설부)	
23	"	"	408-65	천	127	18	127	국(건설부)	
24	"	"	408-66	천	170	77	170	국(건설부)	

경 상 북 도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1-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9조제2항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의무위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
한 영업실적 등의 제출의무 위반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및 영업정지 3개월(처분대상자 참조)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5. 공고기간 : 2011. 05. 30 ~ 2011. 06. 12 (14일간)

6. 처분대상자 : 44개 업체(경고 23, 영업정지 3월 21)

7. 행정처분내용 : 붙임과 같음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건축지적과 (☎053-950-2260)로 문의
바랍니다.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소할 수 있으며(단,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경과 시는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단,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경과 시는 불가)

【붙임】

(경 고)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1	(주)가인피앤디	경북-주택 2007-0007	한창휘	경북 구미시 도량동 563-2 3층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불명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2	굿타임종합토건 (주)	경북-주택 1999-0016	조규현	경북 경산시 사동 599-6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3	(주)금오주택건설	경북-주택 2005-0014	유덕준 박경자	경북 경주시 노동동 241-3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4	대덕건설(주)	경북-주택 2005-0016	권태정	경북 경주시 충효동 2950 나동 202호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5	대성건설	경북-주택 1999-0003	이강대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인평지구 5B 4L 1층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6	(주)더블유 에이와이	경북-주택 2007-0004	유근태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옥성리 193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7	덕흥종합건설(주)	경북-주택 1995-0002	김규택	경북 영주시 하망동 422-53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8	(주)동영건설	경북-주택 2004-0018	천철성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03-42 2층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9	(주)동진	경북-주택 2002-0002	이민자	경북 경주시 서부동 254-10 2층	-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10	(주)동참	경북-주택 2008-0003	이관형	경북 영천시 봉동 670-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1	메이저산업(주)	경북-주택 2007-0023	이양구	경북 안동시 옥동 989-7 설광빌딩 201호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2	(주)모닝힐	경북-주택 2004-0013	박정미	경북 구미시 인의동 601-2 103호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3	(주)미래하우테크	경북-주택 2009-0008	이미리 송병학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45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14	(주)방주주택 건설	경북-주택 1999-0012	김성욱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122-26 관문빌딩 2층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5	(주)상일건설	경북-주택 2007-0008	배철현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349-8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6	(주)신영	경북-주택 1998-0001	황찬익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203-7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17	(주)웅비건설	경북-주택 2006-0018	박진우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32-4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18	(주)제일건설	경북-주택 1988-0003	김재호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1가 71-99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불명
19	(주)진솔씨앤디	경북-주택 2006-0016	이창현	경북 안동시 당북동 315-2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20	(주)한호디.앤.씨	경북-주택 2009-0006	김미희	경북 구미시 오태동 제일프라자 3층 101호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21	해뜰건설(주)	경북-주택 2006-0005	이진웅	경북 안동시 정하동 244-1 부성빌딩 5층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등기반송 사 유
22	(주)해인씨앤씨	경북-주택 2005-0020	이경열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5B 1L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23	(주)홍무개발	경북-주택 2003-0028	손경수	경북 경주시 성건동 703-6 101호	영업실적 및 계획 미제출	경고	2011.4.29	“

(영업정지 3월)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1	관우종합건설(주)	경북-주택 2006-0012	이윤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74-1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불명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2	남지건설(주)	경북-주택 2007-0022	하미미	경북 경주시 동천동 787-1	기술자 일시 미보유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3	(주)다산건설	경북-주택 2007-0021	이승자 황정미	경북 영주시 영주동 338-14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4	(주)담솔	경북-주택 2007-0006	안창훈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74-8 2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5	(주)디엔엘 주택건설	경북-주택 2005-0029	조유환	경북 구미시 인의동 492-3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6	(주)마운틴	경북-주택 2007-0019	김태완	경북 구미시 봉곡동 527 영남네오빌 시티상가 103/104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7	(주)만호	경북-주택 2007-0018	박만호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5-7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8	(주)보성주택산업	경북-주택 2006-0010	손기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77-1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9	부경주택건설(주)	경북-주택 2006-0004	권시균	경북 영천시 완산동 620-2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불명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10	세원산업개발(주)	경북-주택 2005-0025	구경민	경북 구미시 송정동 445-1 명문빌딩 3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1	신흥주택(주)	경북-주택 1987-0002	윤정길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8-2 장미동산 타워상가 205호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2	(주)아진주택	경북-주택 2002-0027	정성관	경북 경주시 황성동 481-9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3	(주)양진건설	경북-주택 2006-0003	우성대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65-5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14	(주)에스	경북-주택 2007-0015	진일선	경북 경주시 성동동 126-3 4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5	(주)운암종합건설	경북-주택 2006-0006	전재식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245-2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6	(주)원우디엔에이	경북-주택 2005-0027	김학성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483-9 3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7	울송주택건설(주)	경북-주택 2007-0017	권순식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53-12 미림빌딩 5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기 반송 사유
18	(주)일선종합건설	경북-주택 2001-0015	김기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460-8 그린빌딩 8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19	(주)피앤케이	경북-주택 2006-0008	박윤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13-8 대보빌딩 2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20	(주)현대토지개발	경북-주택 2007-0025	천수진	경북 구미시 봉곡동 161-4 2층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21	(주)현정건설	경북-주택 2007-0024	김진용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97-7	기술자 없음	영업정지 3월	2011.4.29부터 2011.7.28까지	“

경상북도 공고 제2011-470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제914호	노선명	풍천~강구선
공사의 종류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방도 이설		
구 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159번지 부터 " 1151번지 까지(L=1,294.55m)		
공사시행장소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159번지 일원		
착수예정일	2011년 5월 일	준공예정일	2015년 12월 일
이 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방도 제914호 L=1,294.55m 이설			

경상북도 공고 제2011-471호

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주)한울시오 (박중만)	공공측량 (504-81-91448)	제06 - 05-1083 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76-7 2층	2011.5.23

경상북도 공고 제2011-478호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용역

제안서 예비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를 위한 기업가치평가용역 제안서 예비평가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용역 개요

- 용역명 : 경북관광개발공사 선진화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용역
- 용역목적 :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협상을 위하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및 재무현황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관적이고 공정한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용역
- 소요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응모자격

-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3. 모집인원 : 21명

4. 모집기간 및 접수

- 모집기간 : 2011. 6. 1(수) ~ 6. 10(금)
- 접수장소 : 경북도청 관광진흥과(별관 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FAX(팩스)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경북도청 관광진흥과
 - 담당자 이메일 - yong00209@korea.kr
 - FAX(팩스) - 053) 950-2169

5.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

6. 예비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직능, 대학, 지역, 전문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 제척기준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실제 평가위원 선정 방법 : 제안자 추천에 의한 다빈도 순으로 8명 선정

※ 예비위원 포함

8. 대상자 선정 통지 : 추후 실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통지

9.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당해 용역사업의 심사에 한하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과(053-950-234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 . .

작성자 : (인)

경상북도 경 리 관 귀하

경상북도 공고 제2011-48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1-485호

전기공사업등록업체 행정처분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아 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처 분 명 (사유)	영업정지기간
경북-00476	금호전기	백영일	경북 안동시 옥동 619-6 삼성캐슬상가 105.106호	영업정지3월 (전기공사업법 제16조)	' 11.06.01 - ' 11.08.31

경상북도 공고 제2011-486호

측량업 등록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아 래

2011년 5월 30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규칙 제585호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폐지규칙

1. 폐지 이유

현행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내부 신고보상금 제도를 공익신고 대상자, 신고자, 보상금 지급한도액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공익보상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폐지

소관 담당관 · 과		감사담당관
입 안 자	담당관 · 과장 직위 · 성명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박선용
	담당 직위 · 성명	감사3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두명
	담당자 성명 · 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정원태(053-603-3245)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2010. 05. 13 규칙 제567호 제정]

개정 2010. 8.30 규칙 제573호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2. “내부 공익신고자” (이하 “신고자” 라 한다)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보상금” 이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신고기한)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내부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는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 행위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전화 등으로 신고 후 서면(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 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사실조사) ①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제4조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를 받은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③ 내부 공익신고 및 보상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제9조에 따른 위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해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사 등 신분상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확인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 3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부위원은 청렴한 자로서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지원과장,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내부 공익신고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직부패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교육청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3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징계 등 필요한 조치)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교육청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 별 표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규칙 제2조제1호 가목관련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3천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최고 3천만원 이내)

구 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2	· 규칙 제2조제1호 나목관련	·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최고 3천만원 이내)
3	· 규칙 제2조제1호 다목관련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3천만원 이내) · 알선·청탁행위 신고 : 300만원 이내

※비고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
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직부패 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전 화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급			
신 고 내 용	※ 신고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피신고자의 부패(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공직부패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고 자 :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제5조제2항에 의
거 부패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직부패신고에 따른 이의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이의신청 사 유	※ 이의신청 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
거 이의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교육감(감사관) 귀하

공직부패신고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20 - 호, 접수일자 : 20 . . .

신 청 자 :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
거 인사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 신고접수 처리대장(제7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신청자	인사 등 불평등 조치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비고
			조치일	조치내용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공직부패신고 및 보상금 지급·환수 대장(제11조제4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공직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비고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내용	지급일 (환수일)	지급액 (환수액)	내 용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11-642호

김천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김천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김 천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 김천시 지좌동 376번지 일원(소로3-290호, 소로1-50호선)
- 김천시 지좌동 350-8번지 일원(소로3-209호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개설
- 명 칭 :

○마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소로3-290호선, 소로1-50호선, 소로3-209호선)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

○ 소로3-290호선(L=107.0m, B=6m)

○ 소로1-50호선(L=35.0m, B=6m)

○ 소로3-209호선(L=53.0m, B=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장

-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1(신음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05 인가일 ~ 3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와 같음

사. 관계도서를 김천시청 도시주택과(054-420-66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편 입 용 지 조 서(소로3-290호, 소로3-209호, 소로1-50호)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김천	지좌	394-1	대	638.0	419.0	김천시 지좌동 482-16 덕일 아파트 7-208	김정자	
2	"	"	377	대	35.0	35.0	김천시 지좌동 377	이판식	
3	"	"	377-1	대	120.0	120.0	김천시 지좌동 377	이판식	
4	"	"	377-2	대	37.0	37.0	김천시 지좌동 377	이판식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	"	"	378	대	64.0	64.0	구미시 상모동 197-3 두산 아파트 1001호	한정숙	
6	"	"	378-1	대	84.0	84.0	구미시 상모동 197-3 두산 아파트 1001호	한정숙	
7	"	"	378-2	대	54.0	54.0	구미시 상모동 197-3 두산 아파트 1001호	한정숙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8	"	"	371-1	대	17.0	17.0	김천시 지좌동 371	이창배	
9			374-1	대	7.0	7.0	김천시 지좌동 374	김석순	
10	"	"	379-1	대	18.0	18.0	김천시 지좌동 335	김갑식	
11	"	"	351-1	대	64.0	64.0	김천시 지좌도 440-71	권중일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2	"	"	352-1	대	13.0	13.0	김천시 지좌동 440-71	권중일	
13	"	"	381-1	대	3.0	3.0	김천시 지좌동 322-3 대양 가든 빌라 104-501	김영길	
14	"	"	382-1	대	2.0	2.0	김천시 지좌동 382	박무용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5	"	"	345	대	3.0	3.0	경기도 의정 부시 용현동 547-3 송산 주공 아파트 101-902	왕태랑외2	
16	"	"	345-1	대	42.0	42.0	경기도 의정 부시 용현동 547-3 송산 주공 아파트 101-902	왕태랑외2	

일련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7	"	"	346	대	6.0	6.0	김천시 지좌동 346	홍기술	
18	"	"	350-8	대	160.0	160.0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1005 범어 삼환 나우빌 101-1006	이동신외1	

편입지장물조서

□ 지구명 : 마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소로3-290호, 소3-209,소1-50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1	지좌	394	상수도		1.0	식	김천시 지좌동 482-16 덕일 아파트 7-208	김정자	
	"	"	감나무	30년	1.0	주	"	"	
	"	"	복숭아 나무	20년	1.0	주	"	"	
	"	"	탱자나무	울타리	22.0	m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2	지좌	376-1	담장	콘크리트 (H=0.6)	3.0	m	김천시 지좌동 376	채연승	
	"	"	담장	목재 (H=0.8)	3.0	m	"	"	
	"	"	담장	블록조 (H=1.4) (L=12.7)	17.8	m ²	"	"	
	"	"	담장	철재 (H=2.1)	4.0	m	"	"	
	"	"	가죽나무	30년	1.0	주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3	지좌	377	주택	블록 슬레트	60.5	m ²	김천시 지좌동 377	이판식	
	"	"	창고및 보일러실	블록 슬레트	17.5	m ²	"	"	
	"	"	화장실 및창고	블록 슬레트	8.8	m ²	"	"	
	"	"	가닥	철주 스레트	8.8	m ²	"	"	
	"	"	현관	샷시 스레트	11.0	m ²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건사	철재 스레트 (1.5*3.0)	4.5	m ²	"	"	
	"	"	장독대	콘크리트 (1.5*2)	1.0	식	"	"	
	"	"	마당포장		45.5	m ²	"	"	
	"	"	대문	철재 (문주 포함)	1.0	식	"	"	
	"	"	담장	블록	43.2	m ²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가죽나무	5년	5.0	주	"	"	
	"	"	가죽나무	10년	1.0	주	"	"	
	"	"	에어컨 실외기		1.0	식	"	"	
4	지좌	378	주택	토조 스레트	60.2	m ²	구미시 상모동 197-3 두산 아파트 1001호	한정숙	
	"	"	창고및 보일러실	블럭함석	16.3	m ²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화장실 및창고	블럭함석	3.7	m ²	"	"	
	"	"	수도대	1.5*1.0	1.0	식	"	"	
	"	"	부엌	블록 스레트	6.0	m ²	"	"	
	"	"	마당포장		14.0	m ²	"	"	
	"	"	담장	블록	13.1	m ²	"	"	
	"	"	장독대	3*3	9.0	m ²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5	지좌	371	담장	블록	17.6	m	김천시 지좌동 371	이창배	
6	지좌	379	주택	블록 스레트	12.3	㎡	김천시 지좌동 335	김갑식	
	"	"	주택	토조 스레트	24.0	㎡	"	"	
	"	"	주택	토조 스레트	11.3	㎡	"	"	
	"	"	화장실	블록 스레트	2.8	㎡	"	"	
	"	"	창고	블록 스레트	9.0	㎡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가닥	철주 스레트	22.0	m ²	"	"	
	"	"	마당포장		24.0	m ²	"	"	
	"	"	대문	철재	1.0	식	"	"	
	"	"	가닥	블록 스레트	6.0	m ²	"	"	
	"	"	담장	블록	14.4	m ²	"	"	
	"	"	감나무	5년생	1.0	주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두릅	7년생	5.0	주	"	"	
	"	"	오가피	3년생	1.0	주	"	"	
	"	"	작약	3년생	1.0	주	"	"	
	"	"	웃나무	10년생	1.0	주	"	"	
	"	"	더덕		1.0	식	"	"	
7	지좌	351	창고	판넬	4.2	m ²	김천시 지좌동 440-71	권중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감나무	10년	3.0	주	"	"	
	"	"	가죽나무	10년	1.0	주	"	"	
8	지좌	345	주택	토조 스레트	31.2	m ²	경기도의 정부시 용현동 547-3 송산주공 아파트 101-602	왕태랑 외2	
	"	"	주택	블록 스레트	59.3	m ²	"	"	
	"	"	가닥	목조 선라이트	6.0	m ²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가닥	철주 스레트	10.5	m ²	"	"	
	"	"	계사	블록 스레트	13.2	m ²	"	"	
	"	"	화장실	블록 스레트	5.0	m ²	"	"	
	"	"	부엌	블록	5.0	m ²	"	"	
	"	"	마당포장		10.0	m ²	"	"	
	"	"	수도대	콘크리트	1.0	식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두릅	10년생	12.0	주	"	"	
	"	"	명자나무	5년생	1.0	주	"	"	
	"	"	골담초		1.0	주	"	"	
	"	"	도라지		2.0	m ²	"	"	
	"	"	가죽나무	10년생	3.0	주	"	"	
	"	"	옹벽	콘크리트 (5*102)	1.0	식	"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장	규 모	면적및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물건명	(구조)			주 소	성 명	
	"	"	장독대	2*2	4.0	m ²	"	"	
9	지좌	346	목련나무	10년생	1.0	주	김천시 지좌동 346	홍기술	
	"	"	매실나무	10년생	1.0	주	"	"	
	"	"	매실나무	5년생	1.0	주	"	"	
	"	"	석류나무	5년생	1.0	주	"	"	

문경시 고시 제2011-27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문 경 시 장

1. 사 업 명 칭 : 지엘리더스파크타운 주택건설사업(2단지)

2. 사업 시행자 :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81-21

지엘건설주식회사(대표 : 안준환)

3. 사업 위치 : 문경시 모전동 284-5외 2필지

4.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가스보일러)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사업 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양	○ 대지면적 : 2,262㎡ ○ 연 면 적 : 2,613.688㎡ ○ 규 모 : 4동, 지상5층, 32세대 ○ 전용면적 -70.234㎡ (32세대) ○ 용 도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4,050,000천원	대지면적 115㎡증 204동 TYPE변경

7. 사 업 기 간 : 2010. 11. ~ 2011. 12.

문경시 고시 제2011-2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문 경 시 장

1. 사 업 명 칭 : 지엘리더스파크타운 주택건설사업(1단지)

2. 사업 시행자 :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81-21

지엘건설주식회사(대표 : 안준환)

3. 사 업 위 치 : 문경시 모전동 284외 4필지

4. 난 방 방 식 : 개별난방(가스보일러)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사 업 개 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양	○ 대지면적 : 2,668.0㎡ ○ 연 면 적 : 3,270.5564㎡ ○ 규 모 : 5동, 지상5층, 40세대	4,147,000천원	대지면적 457㎡증 1동 8세대증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11-686호

경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사업 실시계획인가서류 열람·공고

경주시 노서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주 시 장

1.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20일간

2. 열람장소 : 경주시청 도로과(☎779-6447)

3.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

가. 사업의 위치 : 경주시 노서동 42-6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경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사업

○ 명 칭 : 월성 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L=140m, B=8m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06호

○ 성 명 : 경주시장(도로과장)

바. 사업시행의 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3. 7. 31 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4.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고 제2011-421호

전자공인 공고

경산시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전자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경 산 시 장

1. 사 유 : 공인개각에 따른 전자공인 변경
2. 공인 사용 일자 : 2011. 06. 01.

3. 공인인형

전자공인							
폐기공인				신조공인			
공인명	인영	규격	재질	공인명	인영	규격	재질
민원실전용 남천면장의 인		3.5cm 정방형	황동	민원실전용 남천면장의 인		3.5cm 정방형	황동

예천군 공고 제2011-266호

신 조 공 인 공 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예 천 군 수

1. 신조공인 사용개시일 : 2011. 6. 1
2. 신조사유 : 예천군계획위원회 운영
3. 신조(개각)등록 공인 : 붙임과 같음

■ 신조공인

공 인 명	서 체	규 격	인 영
예천군계획위원회위원장인	한글전서체	2.4Cm 정방형	

.....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69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승인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승인하였기에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라벌도시가스(주) 주소 : 경북 경주시 용강동 1275-2번지

점용면적 및 위치	면적 : 165㎡ 위치 : 경북 영천시 문외동 317번지 앞 ~ 완산동 1048-1번지 앞
점용목적	목적 : 도시가스 관로 계속 점·사용
점용 기간	- 당초 : 2006년 06월 13일부터 2011년 06월 12일까지 - 변경 : 2011년 06월 13일부터 2016년 06월 12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75호

하천점용 허가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수자원길 396
점용면적 및 위치	○ 면적 : 시설물(194.5㎡), 일시(628.3㎡)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43-1번지 앞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목 적 : 해평취수장 제3취수시설 설치 시설개요 : 취수시설(폭 : 7.2m×길이18.4m×높이12.9m)

	기계설치(펌프, 배관 등) 1식 전기 및 계측 1식
점용 기간	2011년 05월 24일부터 2016년 05월 23일까지

기 타

고
영

상주소방서 공고 제2011-8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등록업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3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업 지위승계에 따른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상 주 소 방 서 장

1. 등록사항

대 상 명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및 분야	비고
(주)협전산업 개발	경북 상주시 북룡동 293-37	정숙은	제상주2010-2호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 PRIDE GyeongBuk "

우리모두의 자랑 경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곳 **People**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가는 곳 **Rising**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선도 **Innovation**

도민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 **Dream**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북 **Environment**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